

의안번호	제 351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6월 일 (제 311회)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최미애 의원
발의연월일	2012년 6월 4일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
------------	-----

발의연월일 : 2012년 6월 4일

발의자 : 최미애 의원

장병학, 박상필, 이광희,
전웅천, 최진섭, 하재성 의원

1. 제정이유

도내 농·산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와 인구감소 심화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대상은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중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역공동체 유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학생수 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 다.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농·산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 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분담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7조).
- 마. 작은학교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하고 교사는 작은학교 근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사 우선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안 제11조)과 공모제를 통하여 배치된 교장과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함을 명시함(안 제12조).
- 바. 작은학교 교직원의 인사상의 우대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주거 편의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직원 우대 사항을 명시함(안 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1조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 제11조
-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6)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

가) 2012. 5. 14. ~ 2012. 6. 3.(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없음

2) 규제사항 : 해당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호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충청북도 농·산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작은학교 중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제3조의 지원대상 작은학교(이하 ‘작은학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수 증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3. 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영

4.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5. 특기적성 및 체험활동
6.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교육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심의) ① 제4조의 작은학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농·산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작은학교 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수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작은학교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촌교육발전지역교육청협의회(이하 “지역교육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되,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은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도협의회 및 지역교육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위원 및 임명위원에는 농·산촌지역의 학교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대표, 도 및 농·산촌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추진 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교육장은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1조(작은학교 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작은학교에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교의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하고, 교사는 작은학교 근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원의 근무기간)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배치된 작은학교 교장과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13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업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직원이 농·산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감은 법령의 범위에서 작은학교의 장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교육적 특성과 목적 등에 적합한 특성화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 1. 29>

1. 삭제<2004. 1. 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31>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 8. 31>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수업년한) 초등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제42조(수업년한)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제46조((수업년한)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 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산어촌학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

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농어촌 학교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7. 23]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궁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시·도지사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7. 23]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1.26] [대통령령 제23532호, 2012.1.25, 일부개정]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주민의 평생교육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산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교수학습 지원과장·행정예산과장<개정 2008.8.19, 2011. 12. 30>

2. **위촉 및 임명위원:**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교육전문가,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청·학교 및 학부모 등 농산어촌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개정 2010. 8. 2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농산어촌의 교육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농산어촌학교 교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역교육청 협의회) ① 지역교육청 관내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교육청협의회(이하 “지역교육청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교육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622호, 2011. 12. 30>(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작은학교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안 제4조 및 제6조)

제정안은 제4조 및 제7조에서 작은학교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운영 등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예산 필요

나.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협의회에서 지원사업을 심의하게 하고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예산 필요

다. 농촌에 거주하는 교직원 주거편의(안 제13조제2항)

교직원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학교사택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의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서 추계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나. 작은학교 교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에는 제4조의 사업들에 대해 기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모델로 작성하고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등을 추계

다. 물가변동과 인상요인을 배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 제4조에 의해 작은학교 지원사업 경비, 안 제6조, 제9조에 따른 협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안 제13조에 따른 교직원주거시설비등이 소요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소요되는 총 비용은 18,67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3	2015	2016	2017	합계
작은학교 지원사업 (안 제4조)	3,120	3,120	3,120	3,120	3,120	15,600
협의회 운영 (안 제6조, 제9조)	14.4	14.4	14.4	14.4	14.4	72
교직원 주거시설	600	600	600	600	600	3,000
합 계	3,734.4	3,734.4	3,734.4	3,734.4	3,734.4	18,672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방법

가. 지원대상 작은학교 수 산정

- 1)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작은 학교를 초·중학교로 한정하여 청주시 지역을 제외한 도내 작은학교 수를 파악한 바, 대다수의 학교가 초 6학급, 중 3학급의 작은학교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어 조례제정의 실익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
- 2) 초·중 작은학교 중 지역(면)의 중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학교로 정하고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작성
☞ 학교수 산정 : 전체 29개교 / 5년 = 6개교(년) (표6-참고)

[표 1-참고자료] 시군별 초·중 60명 이하 작은학교 현황
 2012.3.1. 기준 (단위: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대상	전체	비율	대상	전체	비율	
충주	14	40	35%	3	17	18%	분교2
제천	7	24	29%	1	9	11%	초중통합4교
청원	12	32	38%	2	12	17%	분교4
보은	12	16	75%	1	5	20%	분교1
옥천	9	14	64%	1	5	20%	분교2
영동	7	15	47%	3	9	33%	
진천	5	16	31%	0	6	0%	분교1
괴산증평	9	20	45%	7	13	54%	분교1
음성	6	21	29%	0	9	0%	
단양	10	15	67%	2	5	40%	분교4, 통합2
합계	91	213	43%	20	90	22%	

※ 작은 학교 비율은 청주시지역을 제외한 초, 중학교 전체 학교수를 기준 작성

[표 2-참고자료] 시군별 초 6, 중 3학급이하 작은학교 현황

2012.3.1. 기준 (단위: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대상	전체	비율	대상	전체	비율	
충주	24	40	60%	4	17	24%	분교2
제천	10	24	42%	3	9	33%	초중통합 4교
청원	20	32	63%	2	12	17%	분교 4
보은	14	16	88%	2	5	40%	분교 1
옥천	11	14	79%	2	5	40%	분교 2
영동	11	15	73%	6	9	67%	
진천	11	16	69%	0	6	0%	분교 1
괴산증평	16	20	80%	8	13	62%	분교 1
음성	13	21	62%	0	9	0%	
단양	12	15	80%	3	5	60%	분교 4, 통합 2
합계	142	213	67%	30	90	33%	

※ 1. 초중통합학교는 초등학교에 포함

2. 분교장은 별도 학교로 취급
나. 학교당 지원사업비 추계

- 1)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작은학교별 사업 지원금액은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특별재정 수요만 추계
- 2) 특별재정수요에 2011년 기준 연중돌봄교실 운영, 전원학교 육성 등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및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비 반영
- 3) 작은학교 중 초 3개교, 중 3개교 예산규모를 참고하여 작성
- 4) 학교당 지원 사업비는 학교운영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추가재정 소요 액만 작성

다. 협의회 운영비 추계

조례안 제6조, 제8, 제9조에서 정한 협의회 운영경비는 도 및 지역교육청 협의회는 총 12개이고, 「충청북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수를 11명 이내로 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외부위원을 6명으로 가정하여 12개 협의회 총 132명의 위원 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외부위원은 72명이 된다.

협의회는 정기회, 임시회 포함하여 평균 년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참석 수당을 10만원으로 추계하고 협의회로서 별도의 운영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라. 교직원 주거시설 비용 추계

교직원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학교주택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필요한 데, 작은 학교당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2. 비용산출 세부 내역

가. 작은학교 지원사업 재정규모 산출(조례안 제4조)

- 지원기준 : 1교당

(단위:백만원)

구분	기본 경비	추가재정 소요					합계
		연중돌봄 교실	특성화 프로그램	시설환경 개선	대주민 교육활동	계	
초등학교	450	50	100	350	20	520	970
중학교	350	40	80	250	20	390	740
계	800	90	180	600	40	910	1,710

※ 1. 특성화 프로그램은 학교 고유프로그램 사업

2. 시설환경비는 학급별 별도 출입문 및 데크 설치, 기타 리모델링 등 사업

3. 방과후교육비는 기본경비에 포함

[표 3-참고자료]

2011년 작은학교 예산현황

2011학년도 최종예산

(단위:천원)

구 分	판동초	군남초	소수초	회인중	안내중	감물중	비 고
합 계	453,415	589,000	524,086	377,597	484,951	236,729	
인적자원운용	7,338	4,536	1,964	14,360	16,072	12,560	
교육복지 및 교육 격차해소	169,067	134,584	99,555	87,267	85,852	39,127	
기본적 교육활동	44,628	200,704	133,661	86,683	92,734	37,635	
선택적 교육활동	75,973	93,114	111,741	60,180	35,662	31,825	
교육활동지원	66,009	43,694	105,138	39,568	119,495	51,426	
학교일반운영	89,900	109,683	72,027	79,039	85,136	63,602	
학교시설확충	0	0	0	10,500	50,000	0	
학교재무활동	500	2,685	0	0	0	554	

[표 4-참고자료]

전원학교 학교별 예산지원액

(단위:천 원)

구 분	기관명	학급수/ 학생수	2009년	2010년	2011년	계
A-type	문의초	6/131	930,000	827,746	74,920	1,832,666
	추풍령초	6/92	879,900	790,964	72,030	1,742,894
	신니중	3/50	478,300	430,061	18,730	927,091
	청산중	3/71	816,000	733,136	42,490	1,591,626
B-type	강내초	6/86	380,000	341,747	56,800	778,547
	단천초	6/47	277,000	249,115	44,540	570,655
C-type	백운초	6/51	48,800	133,731	174,490	457,021
	양성중	5/106			100,000	100,000
	중원중	5/106			100,000	100,000
합 계			3,910,000	3,506,500	684,000	8,100,500

※ A-type : 종합지원, B-type : 시설비지원, C-type : 프로그램지원

[표 5-참고자료]

연중돌봄학교 예산지원현황

(단위:천 원)

학교명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비 고
청원-북이초		62,630	62,500	125,130	2010.지정
보은-관기초	53,750	45,982	50,700	150,432	
옥천-동이초	80,000	64,500	61,250	205,750	
영동-구룡초	180,000	127,898	133,360	441,258	
괴산-도안초	110,100	100,258	131,490	341,848	
음성-청룡초	64,950	52,264	65,205	182,419	
단양-대강초	52,000	37,966	40,837	130,803	
보은-보덕중	78,300	58,078	58,440	194,818	
괴산-목도중	111,100	87,159	71,089	269,348	
단양-단성중	44,620	37,400	40,320	122,340	

※ 돌봄지원 학교 전체 48개교중 학생수 60명이하교만 작성

나. 협의회 운영비(참석수당) 산출(조례안 제4조)

구 분	협의회수	내 역
협의회수	12	도, 및 지역교육청협의회
위원수	72	협의회 위원 11명중 수당지급대상 외부위원 6명
회의수	2	정기회, 임시회
지급액	100천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총지급액	14,400천 원	72명×100,000원×2회

다. 교직원 주거시설비용 추계 : 3,000,000천 원

- 산출식 : 6교×100,000천 원×5년=3,000,000천 원(년600,000천 원)
- 1 학교당 필요금액 1억 원
- 우선 지원대상 작은학교 29개교 중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6개교 추진

4. 비용추계 결과

우선 지원대상 작은학교(초) 수가 29개교가 되므로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6개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① 조례안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년간 3,120백만 원, ②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의회경비는 년간 14.4백만 원, ③ 조례안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교직원 주거시설비는 년간 600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대상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5년간 추가소요 되는 재정은 18,672백만 원으로 추계된다.

□ 조례안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계: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3	2015	2016	2017	합계
작은학교 지원사업 (안 제4조)	3,120	3,120	3,120	3,120	3,120	15,600
협의회 운영 (안 제6조, 제9조)	14.4	14.4	14.4	14.4	14.4	72
교직원 주거시설	600	600	600	600	600	3,000
합 계	3,734.4	3,734.4	3,734.4	3,734.4	3,734.4	18,672

* 조례안 제4조 관련 산출식(초등학교 중심으로 작성)

초등학교 6교×520,000천 원=3,120,000천 원

[표 6-참고자료]

면지역 작은학교(초6학급, 중3학급) 현황

2012. 3. 1. 현재

구분	면(面)수	면지역별 작은학교수				비고
		1면1교지역	1면2교지역	1면3교지역	계	
충주시	11	3 살미, 대소원, 양성면	5 가금, 금가, 동랑 산척, 소태	3 수안보, 노은 엄정	11	
제천시	7	5 금성, 청풍, 수산 한수, 덕산		2 백운면 송학면	7	
청원군	11	3(5) 낭성, 강외, 강내 (미원, 옥산)	2(3) 남이, 문의 (남일면)	3 가덕, 현도 북이-4교	8(11)	
보은군	10	4 수한, 회남 내북, 산외	4 관기, 탄부(초중) 삼승, 회인(초중)	1 속리	9	장안면은 학교없음
옥천군	8	4(6) 안남, 안내, 청성 군서, (청산, 이원)	2 동이 군북		6(8)	
영동군	10	3 매곡, 용화, 양산	5 추풍령, 상촌, 학 산, 용산, 양강	1 심천	9	황간은 해당무
진천군	6	1 백곡	3 덕산, 초평, 문백	1 이월	5	광혜원은 해당무
괴산증평	11	4 문광, 소수, 장연 도안	5 감물, 연풍, 칠성 불정, 사리	2 청안 청천-4교	11	
음성군	7	1(2) 맹동, (대소)	2(4) 소이, 원남 (삼성, 감곡)		3(6)	생극은 해당무
단양군	6	1 적성	2 대강, 어상천	3 단성, 가곡, 영춘	6	
계	87	29(34)	30(33)	16	75(83)	4

- ※ 1. 1면 1교는 초등학교만 있고, ()로 표시된 면은 6학급이상 학교가 있는 면
- 2. 1면 2교, 1면3교의()는 작은학교 이외도 6학급 규모이상 학교가 있는 지역
- 3. 학교가 없는 면 및 학교가 있으나 작은학교가 없는 면은 비고란에 표시
- 4. 초 · 중 통합학교는 1교로 표시